

고 양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시 보

【제 1108 호】

2014년 09월 16일 (화)

선 람	기 관 의 장

회 랑							
-----	--	--	--	--	--	--	--

차 례

입법예고

고양시 입법예고
제2014-48호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고 시

고양시 고시
제2014-26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135호선 외 1 (관산 13통 도로 확
포장공사)}사업 실시계획 고시 18

발행 : 고 양 시

편집 : 공보담당관

(우) 412-70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10(주교동 600) ☎ (031) 8075-2095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6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기업활동 활성화 및 규제완화를 위하여 공업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외 건축물에 제조업소를 포함하는 한편,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공동주택(기숙사 제외)을 추가하고, 관련 법령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수정 및 조례에 미비한 점을 반영하여 일부 조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기업활동 활성화 및 규제완화를 위하여 공업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안 제56조제11호~제13호, 안 제61조제1항제11호~제13호)

1) 건폐율 : 공업지역 60% 이하 → 70% 이하

2) 용적률

가) 전용공업지역 200% 이하 → 300% 이하

나) 일반공업지역 300% 이하 → 350% 이하

다) 준공업지역 250% 이하 → 400% 이하

- 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외 건축물에 제조업소 포함(안 제18조의2)
- 다.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포함(별표 13)
- 라.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용도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삭제(제31조, 제33조, 제36조, 제37조)
 - 제1종자연경관지구, 제1종수변경관지구, 전통경관지구, 조망권경관지구 삭제
- 마. 방재지구 의무화에 따른 방재지구 지정 및 재해저감대책 수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에 대하여 용적률 완화 신설(안 제61조)
 - ※지정대상지역 : 풍수해, 산사태 등 재해 예방 필요 지구
- 바 관계 법령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수정 및 조례에서 확인된 누락사항 정비(안 제17조, 제19조, 제57조의2,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9조, 별표3, 별표4, 별표5, 별표10, 별표 18, 별표19, 별표 20)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 가. 제출기일 : 2014년 10월 06일 까지
-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도시계획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600번지)
 - 전 화 :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 (031-8075-3076)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4조제2항” 을 “법 제57조제4항” 으로 한다.

제18조의2제4호 중 “거목~~때~~목~~때~~목” 을 “거목~~때~~목” 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단서 중 “자문” 을 “심의” 로 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제32조의 제목 중 “제2종” 을 삭제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제34조의 제목 중 “제2종” 을 삭제한다.

제36조 및 제3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9조제1호,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9조제2호 중 “제2종 자연경관지구” 를 “자연경관지구” 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2종 수변경관지구” 를 “수변경관지구” 로 한다.

제56조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중 “60퍼센트 이하” 를 각각 “70퍼센트 이하” 로 한다.

제5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4조제7항” 을 “영 제84조제8항” 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제11호 중 “200퍼센트 이하” 를 “300퍼센트 이하” 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300퍼센트 이하” 를 “350퍼센트 이하” 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250퍼센트 이하” 를 “400퍼센트 이하” 로 한다.

제61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로 한다.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5조제5항” 을 “영 제85조제6항” 으로 한다.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5조제6항” 을 “영 제85조제7항” 으로 한다.

제6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5조제7항” 을 “영 제85조제8항” 으로 한다.

제69조제1항제1호 중 “영 제55조제5항” 을 삭제한다.

별표3 제1호, 별표4 제1호, 별표5 제1호 단서 중 “더목, 러목(바닥면적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노래연습장을 제외한다)〕” 를 각각 “거목, 더목, 러목(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노래연습장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제외한다〕” 로 한다.

별표10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영 별표 11 제1호 라목에 따라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는 100미터

이다.)

별표13 제1호부터 제3호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로 하고, 같은 별표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해당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의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는 제외한다)

별표18 제12조, 별표20 제9호 단서 중 “나목, 라목 및 마목”을 “나목부터 마목까지”로 한다.

별표19 제5호 본문 중 “제1호 사목”을 “제7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과		도시계획과
입 안 자	과 장 직위 증명	도시계획과장 김 영 덕
	팀 장 직위 증명	도시계획팀장 이 재 학
	담당자 성명 전화	김 창 용 031-8075-3076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 (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6. (생략)	제17조 (조건부 허가) ----- -----법 제57조제4항----- -----. 1.~6.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외 건축물)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 시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3. (생략)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너목·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6. (생략)	제18조의2(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외 건축물)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 ----- 거목·더목 ----- 5.~6. (현행과 같음)
제19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생략) 1. (생략) 2. 경사도가 15도 미만인 토지. 이 경우 경사도는 평균경사도를 말하며, 산정방식은 별표26과 같다. 다만, 경사도가 15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u>자문</u> 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3. (생략) ② (생략)	제19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 심의-----.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 (제1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제1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삭 제>

<p><u>건축할 수 없다.</u></p> <p>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 <u>동주택중 아파트</u></p> <p>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 <u>2종근린생활시설</u></p> <p>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 <u>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u></p> <p>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판매 <u>시설</u></p> <p>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u>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타이 있는</u> <u>운동시설</u></p> <p>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u>업무시설 중 나목의 업무시설</u></p> <p>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u>숙박시설</u></p> <p>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u>위락시설</u></p> <p>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u>공장</u></p> <p>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u>창고시설</u></p> <p>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u>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u></p> <p>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u>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u></p> <p>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u>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u> <u>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u></p> <p>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u>자원순환 관련 시설</u></p> <p>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u>묘지관련시설</u></p> <p>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u>운수시설</u></p>	
---	--

제32조 (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생략) 1.~16. (생략)	제32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현행과 같음) 1.~16. (현행과 같음)
제33조 (제1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제1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 판매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타이 있는 운동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나목의 업무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삭 제>

<p>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p> <p>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p> <p>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p> <p>1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p> <p>1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p> <p>1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p>	
<p>제34조 (제2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생략)</p> <p>1.~17. (생략)</p>	<p>제34조 (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현행과 같음)</p> <p>1.~17. (현행과 같음)</p>
<p>제36조 (전통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p> <p>제72조제1항에 따라 전통경관지구안에서 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 다.</p> <p>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 동주택</p> <p>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 2종근린생활시설 (아목, 자목 및 타목(기 원만 해당된다)은 제외한다)</p> <p>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 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p> <p>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판매 시설</p> <p>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 탑이 있는 운동시설</p> <p>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나목의 업무시설</p>	<p><삭 제></p>

<p>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p> <p>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p> <p>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p> <p>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p> <p>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 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 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 보 관·저장시설에 한한다)</p> <p>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p> <p>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p> <p>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p> <p>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p> <p>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p>	
<p>제37조 (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p> <p>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조망권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용적율, 건축물의 높 이, 규모 및 건축물의형태 등 건축제한 은 법 제54조의 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p>	<p><삭 제></p>
<p>제39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생략)</p> <p>1. 제1종 자연경관지구 : 3층 이하로써 12미터 이하</p>	<p>제39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현행과 같음)</p> <p>1. <삭 제></p>

<p>2. 제2종 자연경관지구 : 5층 이하로써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이하로써 12미터 이하로 한다)</p> <p>3. 제1종 수변경관지구 : 3층 이하로써 12미터 이하</p> <p>4. 제2종 수변경관지구 : 5층 이하로써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이하로써 12미터 이하로 한다)</p> <p>5. 전통경관지구 : 3층 이하로써 12미터 이하</p>	<p>2. 자연경관지구 : ----- ----- ----- -----</p> <p>3. <삭 제></p> <p>4. 수변경관지구 : ----- ----- ----- -----</p> <p>5. <삭 제></p>
<p>제56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생략)</p> <p>1.~10. (생략)</p> <p>11. 전용공업지역 : 60퍼센트 이하</p> <p>12. 일반공업지역 : 60퍼센트 이하</p> <p>13. 준공업지역 : 60퍼센트 이하</p> <p>14.~21. (생략)</p>	<p>제56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현행과 같음)</p> <p>1.~10. (현행과 같음)</p> <p>11. ----- : 70퍼센트 이하</p> <p>12. ----- : 70퍼센트 이하</p> <p>13. ----- : 70퍼센트 이하</p> <p>14.~21. (현행과 같음)</p>
<p>제57조의2(도시계획시설의 건폐율)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 공원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p> <p>1.~2. (생략)</p>	<p>제57조의2(도시계획시설의 건폐율) 영 제84조제8항 ----- ----- -----</p> <p>1.~2. (현행과 같음)</p>
<p>제61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p> <p>① (생략)</p> <p>1.~10. (생략)</p> <p>11. 전용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하</p> <p>12. 일반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p> <p>13. 준공업지역 : 250퍼센트 이하</p> <p>14.~21. (생략)</p> <p>②~⑥ (생략)</p> <p><신 설></p>	<p>제61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p> <p>① (현행과 같음)</p> <p>1.~10. (현행과 같음)</p> <p>11. ----- : 300퍼센트 이하</p> <p>12. ----- : 350퍼센트 이하</p> <p>13. ----- : 400퍼센트 이하</p> <p>14.~21. (현행과 같음)</p> <p>②~⑥ (현행과 같음)</p> <p>⑦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법 제37조</p>

	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 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로 한다.
제62조 (기타 용도지구·구역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4. (생략)	제62조 (기타 용도지구·구역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 ----- ----- ----- 1.~4. (현행과 같음)
제63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외하고, 신축건축물에 한한다. 1.~2. (생략)	제63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 ----- ----- ----- ----- ----- ----- ----- ----- ----- 1.~2. (현행과 같음)
제64조 (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	제64조 (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8항 ----- ----- ----- ----- ----- ----- ----- ----- -----

<p>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 \{(1+0.3a)/(1-a)\} \times (\text{제61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a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p> <p>②~③ (생략)</p>	<p>----- ----- ----- ----- ----- ----- -----</p> <p>②~③ (생략)</p>
<p>제69조 (분과위원회) ① (생략)</p> <p>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영 제55조제5항, 제19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과 법 제12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 허가 이의 신청에 관한 심의</p> <p>2.~ 3. (생략)</p> <p>②~⑤ (생략)</p>	<p>제69조 (분과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p> <p>1. ----- : 법 제59조, 제19조 제1항제2호 ----- ----- ----- -----</p> <p>2.~ 3. (현행과 같음)</p> <p>②~⑤ (현행과 같음)</p>
<p>[별표 3]</p> <p>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3호 관련)</p> <p>(생략)</p> <p>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다목, 사목(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와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아목, 더목, 러목(바닥면적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노래연습장을 제외한다)〕</p> <p>2.~17. (생략)</p>	<p>[별표 3]</p> <p>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3호 관련)</p> <p>(현행과 같음)</p> <p>1. ----- ----- ----- ----- ----- 거목, 더목, 러목(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노래연습장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제외한다〕</p> <p>2.~17. (현행과 같음)</p>
<p>[별표 4]</p>	<p>[별표 4]</p>

<p>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4호관련)</p> <p>(생략)</p> <p>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사목 중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게임제공업의 시설 중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과 복합으로 설치되는 시설에 한함), 더목, 러목(바닥면적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노래연습장을 제외한다)]</p> <p>2.~16. (생략)</p>	<p>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4호관련)</p> <p>(현행과 같음)</p> <p>1. ----- ----- ----- ----- ----- 거목, 더목, 러목(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노래연습장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제외한다]</p> <p>2.~16. (현행과 같음)</p>
<p>[별표 5]</p> <p>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5호 관련)</p> <p>(생략)</p> <p>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사목 중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게임제공업의 시설 중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과 복합으로 설치되는 시설에 한함), 더목, 러목(바닥면적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노래연습장을 제외한다)]</p> <p>2.~16. (생략)</p>	<p>[별표 5]</p> <p>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5호 관련)</p> <p>(현행과 같음)</p> <p>1. ----- ----- ----- ----- ----- ----- 거목, 더목, 러목(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노래연습장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제외한다]</p> <p>2.~16. (현행과 같음)</p>
<p>[별표 10]</p> <p>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10호 관련)</p> <p>유통상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1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1 제2호에</p>	<p>[별표 10]</p> <p>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10호 관련)</p> <p>----- -----</p>

<p>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신 설></p> <p>1.~12 (생략)</p>	<p>-----</p> <p>--.(단, 영 별표 11 제1호 라목에 따라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는 100미터이다.)</p> <p>1.~12. (현행과 같음)</p>
<p>[별표 13]</p> <p>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13호 관련)</p> <p>준공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4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4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p> <p><신 설></p> <p>1. (생략)</p> <p>2. (생략)</p> <p>3. (생략)</p>	<p>[별표 13]</p> <p>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13호 관련)</p> <p>(현행과 같음)</p> <p>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해당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의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는 제외한다)</p> <p>2. (현행과 같음)</p> <p>3. (현행과 같음)</p> <p>4. (현행과 같음)</p>
<p>[별표 18]</p> <p>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8호 관련)</p> <p>(생략)</p> <p>1.~11. (생략)</p> <p>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다만, 같은 호 나목, 라목 및 마목은 공공기관이 설치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만 해당된다)</p>	<p>[별표 18]</p> <p>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8호 관련)</p> <p>(현행과 같음)</p> <p>1.~11. (현행과 같음)</p> <p>12.-----</p> <p>----- 나목</p> <p>부터 마목까지 -----</p> <p>-----</p>

13.~15. (생략)	13.~15. (현행과 같음)
<p>[별표 19]</p> <p>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19호 관련)</p> <p>(생략)</p> <p>1.~4. (생략)</p> <p>5. 규칙 별표 2 제1호 사목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장월평천, 도춘천, 공릉천, 가좌천, 장진천, 문봉천을 말한다.</p>	<p>[별표 19]</p> <p>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19호 관련)</p> <p>(현행과 같음)</p> <p>1.~4. (현행과 같음)</p> <p>5. ----- 제7호에서 ----- ----- ----- -----.</p>
<p>[별표 20]</p> <p>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20호 관련)</p> <p>(생략)</p> <p>1.~8. (생략)</p> <p>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다만, 같은 호 <u>나목</u>, <u>라목</u> 및 <u>마목</u>은 공공기관이 설치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만 해당된다)</p> <p>10.~13. (생략)</p> <p>비고 (생략)</p>	<p>[별표 20]</p> <p>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20호 관련)</p> <p>(현행과 같음)</p> <p>1.~8. (현행과 같음)</p> <p>9.----- -----<u>나목부터</u> <u>마목까지</u> ----- ----- -----</p> <p>10.~13.(현행과 같음)</p> <p>비고 (현행과 같음)</p>

고양시 고시 제2014-26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135호선외1(관산13통 도로 확·포장공사)}사업 실시계획 고시

1.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283-12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 【도로:소로3-135호선(관산13통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 작성하고 같은법 제90조 규정에 따라 공람공고 절차 및 같은법 제92조 규정에 따른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 9. 16.

고 양 시 장

1) 실시계획 작성의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283-12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
- 명칭 : 관산13통(소로3-135호선외1) 도로 확·포장공사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도시계획시설(도로)

구분	규 모				연장 (m)	면적 (㎡)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결정	소로	3	135	8	172		
금회 시행	소로	3	135	56.6	41	498.0	
결정	대로	1	11	35~70	12,300		
금회 시행	소로	1	11		11.4	105.0	

라.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고양시장(덕양구 건설과)
-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작성일 ~ 2015.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 “별첨 조서참조”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관계인 주소, 성명 : “바”항과 같음

아.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다, 바”항과 같음

2) 관계도서 : “계재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조서

일련 번호	지번	지목	지 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권리관계	비고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1	240-9	도	442	7	공	고양시				
2	240-5	전	1,187	123	한상선	고양군 벽제읍 관산리 346				
3	238-6	도	38	31	이약제	고양시덕양구 고골길156(관산동)	고양축산업 협동조합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696-4 (삼 송지점)	근저당권 지상권	
4	238-5	답	156	132	이약제	고양시덕양구 고골길156(관산동)	고양축산업 협동조합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696-4 (삼 송지점)	근저당권 지상권	
5	238-12	답	135	134	최장혁	고양군 벽제읍 내유리 676-31				
6	910-42	구	14,384	35	국	건설부				
7	246-2	답	2,602	88	김영선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188				
8	246-17	도	320	53	공	고양시				

○ 지장물 조서

-총괄

번호	구 분	단 위	수 량	비 고
1	컨테이너	동(㎡)	1(18.0㎡)	
2	웬스	개소(m)	2(60.0m)	
3	수목	주	17주	사과나무
4	한 전 주	주	2	
5	신 호 등	주	1	

-지장물 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소 유 자		비고
						성명	주소	
1	덕양구 관산동	240-5	웬스	H=1.5m	44.0m	한상선	고양군벽제읍 관산리346	
2	덕양구 관산동	238-12	콘테이너	6.0×3.0	18.0㎡	최장혁	고양군벽제읍 내유리 676-31	
3	덕양구 관산동	246-2	사과나무	D10cm , H2.5m	17.0주	김영선	고양시덕양구 관산동 188	
			웬스	H=1.5m	16.0m			

-한전주

번호	소재지	지번	위치 (STA)	방향	전주번호	소관청	비고
1	덕양구 관산동	240-5전	0+001	우	9433S 532 고양간 136 H1	한국전 력공사	
2	덕양구 관산동	238-12답	0+037	우	9433S 421 고양간 136 H1L1	한국전 력공사	

-신호등

순위	소재지	위치	방향	구조	소관청	비고
1	덕양구 관산동 240-5	STA 0+001	우		고양시	